■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[별지 제1호서식] <개정 2022. 3. 31.>

## 지적재조사사업 책임수행기관 지정신청서

※ 색상이 어두운 칼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

% 색상이 어두운 간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.					
접수번호		접수일	처리기간 <sub>60일</sub>		
신청인	법인의 명칭		법인등록번호		
	성명(대표자)		생년월일		
	주소				
	전화번호		설립 연월일		
	설립 근거				
	설립 목적				
		5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□) 지정을 신청합니다.	4조의3제1항에 따라 지적재조사사업		

년 월 일

신청인

(서명 또는 인)

(또는 대리인)

(전화번호:

## 국토교통부장관 귀하

신청인 제출서류	1. 사업계획서 2. 다음 각 목의 서류(「민법」 또는 「상법」에 따라 설립된 법인만 해당합니다) 가. 지적재조사사업을 전담하기 위한 조직과 측량장비를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나. 「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」제39조에 따른 측량기술자(지적분야로 한정합니다) 1,000명(권역별 책임수행기관 지정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권역별로 200명) 이상이 상시 근무함을 증명하는 서류	
담당 공무원 확인사항	법인 등기사항증명서	

##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

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「전자정부법」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. \*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.

**신청인** (서명 또는 인)

